



**(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)  
협약서**

2023. 12.



함 양 군

**(주)이산 외 1개사**

# **[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] 협약서**

함양군수(이하 “관리청”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이산(대표이사 이원찬), 한종 산업개발(주)(대표 임남재)(이하 “관리대행업자”라 한다)는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(이하 “처리시설”이라 한다)의 운영관리 업무를 각각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협약목적)** 이 협약은 처리시설을 효율적·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“관리청”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“관리대행업자”에게 관리대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관리대행대상 재산의 명세)** 운영관리 대행대상 재산의 명세는 “관리청”과 “관리대행업자”가 협의·작성하는 인계·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
**제3조(관리대행의 내용 및 처리방법)** 이 협약에 의한 『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』은 “관리청”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4조(관리대행기간 및 협약변경)** ① 관리대행 개시일은 2024년 1월 1일로 한다.  
② 관리대행 기간은 계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,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.  
③ 협약기간 연장 또는 해당 처리시설의 용량증감, 관리대행 시설을 추가하는 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“관리청”과 “관리대행업자”가 협의하여 변경한다.

**제5조(대행관리비)** 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(이하 “대행관

리비” 라 한다)은 연간 3,467,989,000원으로 하고 비목별 내역은 별표 1과 같다.  
② 계약기간의 연장, 처리시설의 추가,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, 유입유량의 증가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“관리청”과 “관리대행업자”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한다.

제6조(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)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관리비 중 인건비목은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.

② 경비목의 조정은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을 준용하여 생산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물가지수 적용 기준일은 입찰일로 하고,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하며, 조정시점은 조정신청 직전월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
제7조(대행관리비 부담 등) ①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“관리대행업자”가 부담하되, 다음 각 호의 비용은 “관리청”이 부담한다.

1. 관리대행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·보수공사와 단위건당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
2. 비품, 차집관로 점검용 차량,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
3.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
4. 화재 및 풍수해보험
5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
6. 관리대행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, 지방세 등 각종 세금
7. 기타 “관리청”이 인정하는 비용

② “관리대행업자”는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, 용도, 예상금액, 집행시기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“관리청”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“관리청”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을 “관리대행업자”

에게 대행하게 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관리대행업자”는 “관리청”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건수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될 때는 “관리청”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.

④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“관리대행업자”가 책임지고 보수, 유지,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,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,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“관리청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계약보증금)**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“관리대행업자”는 계약보증금으로 연간 대행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계약보증증권을 “관리청”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재대행의 금지)** “관리대행업자”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.

**제10조(법령 등의 준수)** “관리대행업자”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“관리청”이 별도로 정하는 『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』에 따라야 한다.

**제11조(업무의 적정관리)** ① “관리대행업자”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“관리청”과 협조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② “관리대행업자”는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 “관리청”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“관리대행업자”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·배치하여야 하며,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·관리될 수 있도록 “관리대

행업자” 가 적정하게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“관리대행업자” 는 운영인력의 퇴사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건비를 “관리청” 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.

제12조(수질관리) ① “관리대행업자” 는 방류수 수질이 하수도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.

② “관리대행업자” 는 처리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“관리청”에게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“관리대행업자” 는 “관리대행업자”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질기준 초과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(시설설비 등의 관리) “관리대행업자” 는 처리시설에 설치된 시설, 설비,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관리 대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“관리청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1(안전 · 보건 확보) ① “관리청” 은 관리대행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 · 보건 확보를 위하여 “관리대행업자”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“관리대행업자” 는 “관리대행업자” 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· 보건 확보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고보고) “관리대행업자” 는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“관리청” 에게 보고하고 “관리청”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 관리대행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5조(실적보고 및 확인) ① “관리대행업자” 는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쳐

리성과를 관련규정 또는 “관리청”이 정하는 방법·절차에 따라 “관리청”에게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.

② “관리청”은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“관리대행업자”와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**제16조(관리대행성과서 제출)** ① “관리대행업자”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“관리청”과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도래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② “관리대행업자”는 계약만료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③ “관리청”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 갱신 또는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50일 이전에 대행성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관리대행업자”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“관리청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“관리대행업자”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계약만료 이전에 성과서를 제출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포함한 관리대행성과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“관리청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대행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)** ① 대행관리비는 연간 총대행관리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“관리대행업자”의 청구에 의하여 “관리청”은 실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“관리대행업자”에게 지급한다. 이때,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행일은 실제의 청구일과 관계없이 매월 말일로 한다.

② “관리청”의 사정으로 대행관리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.

③ “관리대행업자”는 매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“관리청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(인센티브 지급) ① 연간 처리시설 운영결과 정산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 대비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“관리청”은 절감액의 일부를 “관리대행업자”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② 운영비용 절감액 산정방법은 환경부 고시 「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」 [별표 3]에 따른다.

제18조(기밀유지) “관리대행업자”는 관리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“관리청”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9조(민·형사상의 책임) “관리대행업자”는 관리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“관리대행업자”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20조(협약의 해지) ① “관리대행업자”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“관리청”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관리대행업자”가 관리대행 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
2. “관리대행업자”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

② “관리청”은 제1항 각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관리청”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“관리대행업자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“관리대행업자”는 “관리청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21조(손해배상)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“관리청”에게 귀속된다.

②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“관리대행업자”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“관리청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“관리대행업자”는 “관리대행업자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관리대행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“관리청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

배상하여야 한다.

-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“관리청”과 “관리대행업자”가 협의하여 정한다.
- ⑤ 관리대행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“관리대행업자”의 부담으로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의 발생이 “관리청”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“관리청”이 부담한다.

제22조(관할법원)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“관리청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.

제23조(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)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“관리청”과 “관리대행업자”가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14일

“관리청”	함양군수	진병영	(인)
“관리대행업자”	주식회사 이산	이원찬	(인)
한종산업개발(주)		임남재	(인)